



코로나 19 (COVID-19)의 검사와 치료

무비자이거나 비자 상태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세요.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호주의 수도](#)
- [뉴 사우스 웨일즈](#)
- [노던 테리토리](#)
- [퀸즐랜드](#)
- [남 호주](#)
- [타스마니아](#)
- [빅토리아](#)
- [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의 호주 비자 건강 검진

추가적인 코로나 19 (COVID-19) 제한 조치로 빅토리아주에서는 비자 관련 건강 검진이 모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의 [공중 보건](#) 발표 내용에 따라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WHM) 비자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WHM) 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3개월 또는 6개월의 '지정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 2차 또는 제 3차 WHM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 작업의 조건](#)를 참조하세요.

워홀러(WHM)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호주 전역에서 수행해온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중요한 코로나 19 관련 업무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 (WHM) 2차, 3차 신청에서 '특정 근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최근 뉴스 \(latest news\)](#)를 참조하세요.

제2, 제3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중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국 귀환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요 부문으로는 농업, 식품 가공, 보건 및 의료,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아동 보육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방문 비자\(서브클래스 600\)](#)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 영어 능력, 건강, 성격 등을 포함한 비자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차 또는 3차 WHM 비자 신청하기

2차 또는 3차 워킹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17) 비자 또는 워크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6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웹 사이트에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2차 워킹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17\) 비자](#)
- [3차 워킹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17\) 비자](#)
- [2차 워크 앤드 홀리데이\(Work and Holiday, 서브클래스 462\) 비자](#)
- [3차 워크 앤드 홀리데이\(서브클래스 462\) 비자](#)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브릿징 비자의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8547 비자 조건, 고용주 한 명과 6개월 작업으로 기간 제한

워홀러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와의 작업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단, 동일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내무부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농업, 식품 가공, 보건 및 의료,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아동 보육을 포함하는 중요 분야에서 근무하는 워홀러의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중요 분야 근무

워홀러(WHM)는 2020 년 1 월 31 일 이후에 호주 전역에서 수행한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의 중요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WHM) 2 차나 3 차 신청에 '특정 근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최근 뉴스\(latest news\)](#)를 참조하세요.

중요 부문에 근무하지만, 2 차나 3 차 WHM 비자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본국 귀환이 불가능한 워홀러는 [임시 활동 비자\(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이벤트 스트림\(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는 무료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 작업 조건](#)을 참조하세요.

비자 소지자가 재정난을 겪는 경우

체류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귀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9-20 회계연도에 최대 1 만 달러의 호주 퇴직 연금을 비교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거의 만료된 상태에 중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며 여행 제재로 인해 귀국할 수 없고 다른 비자 요구 조건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비자 신청비(VAC)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등의 잔술과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